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946

발의연월일: 2024. 11. 27.

발 의 자:윤종오·전종덕·염태영

황운하 · 정혜경 · 박수현

한창민 · 민형배 · 이재강

김준혁・조 국 의위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배종사자의 과로사가 잇따라 일어남에 따라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택배종사자의 과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하고, 나아 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반 조성과 관련 종사자 및 소비자 보 호를 위해 현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제정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고, 계약기간, 위탁업무의 범위 등 표준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 그 결과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지 않은 위탁계약서를 사용하고, 위탁 구역을 명시하지 않은 표준계약서를 근거로 영업점의 위탁 구역을 일방적으로 회수해 택배종사자의 고용불안과 과로를 야기하는 사례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위탁구역을 포함해 표준계약서 에 포함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 또한 택배서비스사업자

가 택배종사자의 집화, 배송 등 계약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에도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함(안 제32조제2항 신설, 제11조제1항 신설 등).

아울러 생활물류서비스 평가 기준에 종사자의 근로시간 및 근로환경의 안정성을 추가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종사자 안전 확보의무화와 업무시간 범위를 1주 60시간으로 한정하여 택배종사자 과로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35조제2항제6호 신설, 제36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조의2(택배서비스의 재위탁 금지)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영업점은 위탁받은 업무를 다른 영업점에 재위탁할 수 없다.
 - ② 제8조제2항에 따라 영업점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택배서비스 종사자는 영업점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다른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다만, 택배서비스종사자가 영업점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전부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영업점이 택배서비스종사자와 체결한 위탁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재위탁 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2항에"로 한다.

①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조치로 인하여 택배서비스종사자가 영업점과 체결한 계약서에 명시된 화물의 집화, 배송 등의 업무를 수행할수 없게 된 경우는 모두 계약해지로 본다.

제3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택배서비스 사업자 및 영업점은 제1항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표준계약서의 효력에 우선하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1. 집화 및 배송구역
- 2. 집화, 배송수수료 및 택배서비스종사자가 분류업무에 참여하는 경우 그에 따른 수수료
- 3.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의 책임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5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6.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근로시간 및 근로환경의 안전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택배서비스종사자의 과로예방을 취한 조치)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하여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업무 시간은 1주 60시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6조의2를 위반하여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업무를 지시한 자제51조제1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재위탁한 영업점 2의3. 제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재위탁한 택배서 비스종사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신 설></u>	제8조의2(택배서비스의 재위탁			
	금지)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자로부터 업무			
	를 위탁받은 영업점은 위탁받			
	은 업무를 다른 영업점에 재위			
	탁할 수 없다.			
	② 제8조제2항에 따라 영업점			
	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택			
	배서비스종사자는 영업점으로			
	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다른 택			
	배서비스종사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다만, 택배서비스종사			
	자가 영업점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전부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영			
	업점이 택배서비스종사자와 🤊			
	결한 위탁계약과 동일한 조건			
	으로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재위탁 할 수 있다.			
제11조(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	제11조(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			
약의 해지) <u><신 설></u>	약의 해지) ① 택배서비스사업			
	자의 조치로 인하여 택배서비			
	스종사자가 영업점과 체결한			

① (생 략)

② <u>제1항에</u>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③ (생 략)

제32조(표준계약서) ① (생 략)

<신 설>

계약서에 명시된 화물의 집화, 배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는 모두 계약해지 로 본다.

-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 ③ <u>제2항에</u>-----

----**.**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 제32조(표준계약서) ① (현행과 같음)
 - ② 택배서비스 사업자 및 영업점은 제1항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하고, 표준계약서의 효력에 우선하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수 없다.
 - 1. 집화 및 배송구역
 - 2. 집화, 배송수수료 및 택배서 비스종사자가 분류업무에 참 여하는 경우 그에 따른 수수 료
 - 3.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의 <u>책임</u>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② (생략)

제35조(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제35조(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 ① (생 략)

- ② 서비스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5. (생략) <신 설>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 7. ------제6호---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 ⑦ (생 략) <신 설>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49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신 설>

는	시	-항
---	---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평가) ①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근 로시간 및 근로환경의 안전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36조의2(택배서비스종사자의 과로예방을 취한 조치) 택배서 비스종사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하여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업 무 시간은 1주 60시간 범위 내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제36조의2를 위반하여 택배 서비스종사자에게 업무를 지 시한 자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5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 (생략)

<신 설>

<신 설>

3. ~ 14. (생 략)

② (생략)

제51조(과태료)	(1)	 	

- 1. 2. (현행과 같음)
- 2의2.제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재위탁한영업점
- 2의3. 제8조의2제2항을 위반하 여 위탁받은 업무를 재위탁한 택배서비스종사자
- 3. ~ 14.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